

#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11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12. 22)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### 가. 제안이유

-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평창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
 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
  -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
-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감면축소 및 폐지

-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
-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
- 별장 감면폐지
-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감면 억제 및 소폭 확대
  -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소폭 확대
  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민임대주택까지 소폭 확대
-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
  -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면제에서 50% 경감
  -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5년간 면제에서 5년간 50% 경감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·제8조·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본 조례의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
-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
  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연장하고
  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.

- 그리고,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
  - 주민공동채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별장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.
  - 또한,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
  -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5년간 면제에서 5년간 50%경감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.
  - 또한,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지정문화재 보호정책, 과밀억제 정책등 국가정책 시행에 부응하고 특히, 별장감면 폐지 및 주민공동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등 감면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.
  -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